

# 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     보
http://www.daedeok.go.kr

선	기관(부서)의 장
람	

**제2023-66호**  
**2023. 11. 10.(금)**

## 차      례

### 고      시(2)

- 대전 도시관리계획(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고시 제2023-112호) · 1
- 지적기준점 성과고시(고시 제2023-113호) ..... 7

### 공      고(3)

-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(공고 제2023-1154호) ..... 8
-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(청문) 공시송달 공고(공고 제2023-1155호) ..... 9
- 공시송달 공고(공고 제2023-1156호) ..... 10

공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## 대전 도시관리계획(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171-2번지 일원에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수립된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어린이놀이터 및 마을회관으로 이용중인 신대노인복지관(신대동 169-1번지)에 대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어린이놀이터를 철거하고 노인 프로그램실을 증축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"<http://www.eum.go.kr>"에서 열람 가능)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(도시계획과 ☎042-608-5105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2023년 11월 10일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: 신대지구) 결정 조서(변경없음)
  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없음)
    - 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
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m <sup>2</sup> 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1	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대덕구 신대동 171-2번지 일원	76,617	-	76,617	

나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1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가) 용도지역 결정 조서

구분	구분	면적 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 후		
주거지역	계	76,617	-	76,617	100.0	
	제1종일반주거지역	76,617	-	76,617	100.0	

나) 용도지구 결정 조서 : 해당사항 없음

2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가) 교통시설

- 도로

○ 도로 총괄표

구분	합계			1류			2류			3류		
	노선	연장(m)	면적 (㎡)	노선	연장(m)	면적 (㎡)	노선	연장(m)	면적 (㎡)	노선	연장(m)	면적 (㎡)
합계	11	1,512	13,039	1	491	5,138	8	754	6,259.5	2	267	1,641.5
소로	11	1,512	13,039	1	491	5,138	8	754	6,259.5	2	267	1,641.5

※ 지구내 해당하는 부분만 산정

○ 도로 결정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1	신대1	10	국지 도로	743 (491)	신대동 113-4	신대동 218-1	일반 도로		대덕구 고시 제2003-58호 (2003.11.28)	
기정	소로	2	신대1	8	국지 도로	53	신대동 185-7	신대동 218-1	일반 도로		대덕구 고시 제2003-58호 (2003.11.28)	
기정	소로	2	신대2	8	국지 도로	367 (184)	신대동 221	신대동 382-6	일반 도로		대덕구 고시 제2003-58호 (2003.11.28)	
기정	소로	2	신대3	8	국지 도로	113	신대동 228-1	신대동 172-5	일반 도로		대덕구 고시 제2003-58호 (2003.11.28)	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2	신대5	8	국지 도로	423 (136)	신대동 380	신대동 228-5	일반 도로		대덕구 고시 제2003-58호 (2003.11.28)	
기정	소로	2	신대6	8	국지 도로	75	신대동 390-1	신대동 391	일반 도로		대덕구 고시 제2003-58호 (2003.11.28)	
기정	소로	2	신대8	8	국지 도로	84	신대동 502-1	신대동 228-5	일반 도로		대덕구 고시 제2003-58호 (2003.11.28)	
기정	소로	2	신대9	8	국지 도로	40	신대동 502-1	신대동 230-1	일반 도로		대덕구 고시 제2003-58호 (2003.11.28)	
기정	소로	2	신대10	8	국지 도로	69	신대동 502-1	신대동 235	일반 도로		대덕구 고시 제2003-58호 (2003.11.28)	
기정	소로	3	신대1	6	국지 도로	30	신대동 502-1	신대동 505	일반 도로		대덕구 고시 제2003-58호 (2003.11.28)	
기정	소로	3	신대2	6	국지 도로	237	신대동 502-1	신대동 237-3	일반 도로		대덕구 고시 제2003-58호 (2003.11.28)	

주) ( )는 사업지구 내 연장

- 주차장

○ 주차장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			1,793	-	1,793		
기정	①	신대1 주차장	대덕구 신대동 502-20일원	489	-	489	대덕구 고시 제2003-58호 (2003.11.28)	
기정	②	신대2 주차장	대덕구 신대동 238-1일원	1,304	-	1,304	대덕구 고시 제2003-58호 (2003.11.28)	

나) 공간시설

- 광장

○ 광장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①	신대 일반광장	광장	대덕구 신대동 228-5일원	1,364	-	1,364	대덕구 고시 제2003-58호 (2003.11.28)	

3)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가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- 획지계획기준

- 최소규모를 「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」 제53조에 따른 지역여건, 기반시설 등을 고려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90㎡로 정하고 90㎡미만의 필지는 주변토지와 공동 건축을 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지구 내 과소필지와 맹지형 토지를 억제하여 주변 토지규모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
- 획지의 권장규모는 『친환경적 택지개발편람. 2000.8 한국토지공사』의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평균평형을 적용하여 230㎡으로 설정

계획대상획지	획지규모		비 고
	최소규모(규제)	권장규모(권장)	
전 구 역	90㎡	230㎡	

- 공동건축지정 기준(권장)

- 주거지역내 대지의 분할제한 최소규모 변경(90㎡ → 60㎡)으로 기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의 연속성 유지 및 과소필지 방지를 통한 획지계획 유지

규 제	권 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」 제53조에 따른 지역여건, 기반시설 등을 고려한 대지의 분할제한 최소규모 90㎡ 미만 획지</li> <li>○ 도로확보가 곤란한 맹지</li> <li>○ 최소규모 미만의 획지 중 이미 공동건축 되었거나 토지소유자가 합의에 의하여 공동건축을 신청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획지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</li> <li>○ 차량출입금지구간으로 지정되어 도로접근이 불가능한 획지</li> <li>○ 계획권장규모 미만의 획지상호간의 공동건축</li> <li>○ 연접한 대지 간 자율적 공동건축</li> </ul>

주) 토지분할시 인접한 토지와 합필을 전제로 「건축법」 및 「대전광역시 건축조례」에서 정한 최소규모 미만의 분할가능

- 나)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
 - 건축물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계획

도면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
-	전구역	허용용도	-
		불허용도	• 「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
		건폐율	• 60% 이하
		용적률	• 150% 이하
		높이	• 4층 이하

-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① 차량동선

- 간선가로변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를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,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설치
- 노선폭이 협소한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규제

구분	위치	적용기준
차량출입 불허구간(규제)	국도17호선변	○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 획지로의 직접 진출입을 선별적으로 제한
차량출입 허용구간(규제)	국도17호선변	
일방통행(규제)	소로3-2호선변	○ 지구 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일방통행으로 규제

② 지붕

- 적정개발규모 설정을 통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구성
- 간선도로(국도17호선)의 도시기능상 역할을 고려하여 건축물과 가로로 구성되어지는 외부공간을 특징적으로 조성
- 대규모 개발가능획지에 대한 공개공지를 활용한 외부공간의 조성
- 건축물의 형태, 재료, 색채 등의 통일성 유도로 가로경관의 연속성 및 통일성 확보
- 건축물의 지붕은 구배 4/10 이상의 경사지붕을 권장

구분	위치	적용기준
지붕의 형태 (권장)	전구역	○ 구배 4/10 이상의 경사지붕 설치

## 2.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(변경)

### 가. 시행지침 신·구대조표

기 정	변 경
<p>제32조(어린이놀이터)</p> <p>① 어린이가 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주변에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정으로 생울타리를 만들어주고 느티나무와 같은 녹음식재를 한다.</p> <p>② 설치시설 및 기준은 「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」을 따르되 어린이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구들이 되도록 한다.</p> <p>③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등을 설치하되 어린이 보호를 고려하여 배치한다.</p> <p>④ 시설은 안전성, 경제성, 편리성, 견고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.</p>	<p>제32조(어린이놀이터)</p> <p>① 삭제</p> <p>② 삭제</p> <p>③ 삭제</p> <p>④ 삭제</p>
<p>※ 변경사유 : 노인여가복지 증진 및 어르신 편의를 제공코자 마을회관 증축을 위하여 이용객이 저조 (1일 최대 2명 내외)한 어린이 놀이터 철거에 따른 제반 규정 삭제</p>	
<p>제41조(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)</p> <p>① 기존 건축물의 증축·개축·대수선·이전·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...중략...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.</p> <p>※ 여기서 증축면적은 동별로 산정하며, 증축횟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회에 한함</p>	<p>제41조(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)</p> <p>① 기존 건축물의 증축·개축·대수선·이전·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...중략...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.</p> <p>※ 여기서 증축면적은 동별로 산정하며, 증축횟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2회에 한함</p>
<p>※ 변경사유 : 기존 마을회관(신대노인복지관) 증축 필요성에 따라 증축 횟수 1회 제한을 2회로 규제 완화</p>	

## 3. 관계도서 : 게재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## 지적기준점 성과고시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 및 「지적측량시행규칙」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를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10일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장

기준점 종류	기준점 번호	전		후		비 고
		평면직각중형선좌표		평면직각중형선좌표		
		X 좌 표	Y 좌 표	X좌표	Y좌표	
도근점	3021	-	-	419779.38	236570.64	세계좌표(신설)
도근점	3022	-	-	419819.39	236649.78	세계좌표(신설)
기 준 원 점 명		증부원점				
소 재 지		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일원				
측 량 년 월 일		2023년 11월 3일				
측 량 성 과 보 관 장 소		대덕구청 토지정책과				
비 고		-				

끝.



## 재결서 정보 공시송달 공고

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「경부선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,<대전시 대덕구 1차,23수용0479호>」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보를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보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1월 10일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사업명: 경부선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
2. 사업시행자: 한국도로공사(남부도로 개량사업단)  
※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54 8층, ☎ 063-712-5914)
3. 공고기간: 2023. 11. 10. ~ 11. 30.(21일간)
4. 재결서 수령장소 : 대덕구청 건설과(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, 오정동)
5. 공시송달 대상자

번호	성명	송달주소(최종확인지)	연락처	비고
1	김○례	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로33번길 79-6, (신대동)	-	공시송달 대상
2	김○용	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로33번길 83, (신대동)	-	
3	박○준	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로 40, 405동 21 05호(상대동,도안휴먼시아4단지)	-	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건설과(☎ 042-608-521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(청문) 공시송달 공고

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(영업허가 등)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(말소)에 따른 영업자의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11월 10일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공고기간: 2023. 11. 10. ~ 2023. 11. 24.(15일간)
2. 근거법규: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4항, 제37조제7항
3. 행정처분(직권말소) 공고내용
  - 가. 처분의 제목: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업소 직권말소
  - 나. 대상업소: 페리카나대화오정점 (오0임) / 대전 대덕구 동심1길 32, 1층(대화동)
  - 다.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: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
- 페리카나대화오정점(사업자등록 폐업일 2019. 7. 23.)
4. 고지사항
  -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24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5. 본 처분에 대한 문의: 위생과 위생관리팀 ☎(042)608 - 6902. 끝.

## 공시송달 공고

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79조(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0일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제 목 :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(2023년도 이행강제금 재부과 대상)
2. 공고기간 : 2023. 11. 10. ~ 2023. 11. 24.(14일간)
3. 공고장소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
4. 송달대상 : 붙임 참조
5. 송달내용

23년도 이행강제금 재부과 대상 건축물 중 시정조치를 위하여 위반건축물 시정촉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대덕구청 건축과(☎042-608-5143)로 연락 바랍니다.

아울러, 공시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【붙임】 공시송달 대상

연번	대상자	위법행위 현황				위반내용	비고
	성명	위치	용도	구조	면적(m <sup>2</sup> )		
1	유○준	읍내동 343-12	일반음식점	철파이프구조	32.50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2	장○진	중리동 411-9	일반음식점 창고	철파이프구조 조립식패널구조	21.00 13.20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3	이○주	중리동 500-11	주택	조립식패널구조	10.80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4	송○숙	오정동 705-10	창고	조립식패널구조	22.80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5	김○란	비래동 137-35	주택	조립식패널구조 경량철골구조 조립식패널구조	6.60 1.91 6.88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6	길○환	신탄진동 174-14	주택	시멘트블럭구조	19.15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7	김○엽	비래동 140-1	창고	컨테이너구조	6.25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8	최○주	비래동 137-36	주택	FRP(넥산)구조	5.45 6.90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9	유○미	읍내동 336-2	주택	시멘트블럭구조	21.36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10	정○욱	송촌동 466-1	창고	조립식패널구조	12.09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11	김○진	중리동 173-14	음식점 창고	조립식패널구조	17.55 5.70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12	문○식	연축동 199-1	창고 임시사무실	컨테이너구조	27.00 36.00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13	백○순	덕암동 8-18	창고	조립식패널구조	22.60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14	이○숙, 한○수	대화동 35-411	주택	시멘트블럭구조	48.60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15	김○남	중리동 254-30	주택	경량철골구조	9.95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16	김○희	평촌동 535-1	계단	일반철골구조	3.00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
17	김○배	송촌동 473-13	창고	조립식패널구조	13.20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18	홍○례	송촌동 454-3	음식점	조립식패널구조	22.00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19	송○자	연축동 200-4	창고	조립식패널구조	9.00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20	장○숙	목상동 14-10	창고	조립식패널구조	10.29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21	김○후	평촌동 535-1	창고	조립식패널구조 조적구조 조립식패널구조 조립식패널구조	3.30 11.70 10.00 2.60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22	정○숙	평촌동 535-1	창고	조립식패널구조	11.00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23	강○화	평촌동 535-1	창고	조립식패널구조	2.00 3.00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24	김○희	평촌동 535-1	창고	조립식패널구조	7.00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25	박○미	중리동 132-3	창고	조립식패널구조	49.56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26	계○순	중리동 366-18	음식점	철파이프구조	20.00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27	강○자	비래동 산33-11	종교시설 창고	철파이프구조 조립식패널구조	153.00 47.50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28	김○영	읍내동 58-4	종교시설	FRP구조	4.14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29	박○진, 이○모	신탄진동 143-31	음식점	철파이프/천막	10.50 5.60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30	이○봉	비래동 558-33	창고	시멘트블럭조	6.48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31	심○수	대화동 40-85	음식점	조립식패널구조	53.85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32	최○영	중리동 119-6	소매점	조립식패널구조	8.51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33	최○섭	오정동 21-2	창고	철파이프구조	19.80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
34	주○국	비래동 137-3	창고	조립식패널구조	4.20	「건축법」 제14조 무단증축	폐문부재